

##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92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1997. 11. 18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# 1. 주 문

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'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'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저함

### 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'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'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

### 3. 주요골자

가. 관련규정 :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

나. 구성인원 : 11 명(총무사회위원회5, 도시산업위원회6)

다. 위원선임 :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 거쳐 선임

라. 심사내용

- '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
- '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